

일본, 목재·목제품의 지속가능성을 증명하는 가이드라인 제시

민 경 택*

불법 벌채를 방지하는 것은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일본은 지금까지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본적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G8 환경·개발 장관회의는 정부조달, 무역규제, 목재 생산국 지원 등 구체적 행동을 합의하였는데 이는 2005년 7월 영국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승인되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기후변화 이니셔티브’에서 불법벌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합법성과 지속가능성의 인증방법을 정리하고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의 조달 추진에 관한 법률(2000년 법률 제100호)’에 기초한 환경물품 조달에 관한 기본 방침을 개정하여 합법성과 지속가능성이 증명된 목재·목제품을 국가 또는 독립행정법인 등에서 조달하도록 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목재·목제품의 공급자가 합법성과 지속가능성을 증명할 때 필요한 유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minkt@krei.re.kr 02-3299-4196

1.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합법성

이 가이드라인에서 합법성이란 원목이 생산된 국가 또는 지역의 산림관련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벌채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행하여진 산림에서 수확된 것을 말한다.

(3) 산림인증제도

산림인증제도는 독립된 산림인증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3기관이 산림경영자의 산림관리수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4) CoC(Chain of Custody) 인증제도

CoC인증제도는 산림인증을 취득한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목제품이 그렇지 않은 산림에서 생산된 것과 혼합되지 않도록 적절한 분별관리를 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3기관이 목재·목제품 사업자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5) 분별관리

분별관리란 합법성과 지속가능성이 증명된 목재·목제품이 그렇지 않은 것들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목재·목제품의 합법성과 지속가능성의 증명방법

(1) 산림인증제도와 CoC 인증제도를 활용한 증명방법

산림인증제도와 CoC 인증제도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행하여지는 산림을 제3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고, 생산된 목재·목제품을 분별관리하여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이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합법성과 지속가능성은 산림인증을 취득한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목제품이 CoC 인증과 연계하여 목재·목제품에 인증마크를 압인하거나 라벨 등을 부착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2) 산림·임업·목재산업 관계단체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의 증명방법

산림·임업·목재산업 관계단체는 합법성과 지속가능성이 증명된 목재·목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자주적 행동규범을 작성할 수 있다. 자주적 행동규범은 합법성과 지속가능성이 증명된 목재·목제품의 공급에 관계하는 구성원에 대하여 추진 방법의 적절성의 평가방법(예를 들면, 분별관리체제, 문서관리체제의 심사·인정 등), 목재·목제품을 공급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정하여 공표한다.

구체적으로 관계단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업자는 납품처의 관계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재·목제품의 합법성과 지속가능성, 분별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증명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각각의 납품단계마다 반복적으로 증명서를 교부하여 합법성과 지속가능성을 연쇄적으로 증명한다.

(3) 개별기업의 독자적인 증명방법

규모가 큰 기업은 앞에서 언급한 (1) 또는 (2)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산림의

수확단계부터 납품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유통경로에 따라 독자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기업의 독자적인 증명은 산림·임업·목재산업 관련단체의 인정을 받아 사업자가 행하는 증명방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4. 증명서의 보관

사업자는 증명서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증명의 근거를 요구하는 경우에 관계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추진상황의 검증과 수정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산림·임업·목재산업 관계단체, 대학교수, 환경 NGO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하고 환경물품의 조달에 관한 기본 방침에 따라 국가에서 목재·목제품을 조달할 때 관계자의 추진 상황을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한다.

자료 : <http://www.rinya.maff.go.jp/policy2/ihou/gaidorain.pdf>